

『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5월 21일

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금오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신설과 주경기장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여 체육시설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제2조)
-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, 보조경기장 및 금오테니스장 신축에 따른 사용료 조정(안 제10조 및 별표1, 별표2, 별표4)
-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관련 서식 신설 및 변경
(별지 제2호의2서식에서 별지 제2호의4서식, 별지 제3호 서식)

라. 참고사항

○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시민운동장, 보조경기장, 금오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조정하고,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이용시간, 체육시설 및 부속 시설 사용료, 사용기준 등을 명시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시민운동장, 보조경기장 사용료 별표1, 금오테니스장 사용료 별표2, 부속시설 사용료 별표4 신설
- 시설 사용에 따른 별지제2호의 2서식, 별지제2호의 3서식, 별지제2호의 4서식, 별지제3호서식 신설.
- 안 제 23조 위탁의 대상을 법인을 추가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인상 및 신설에 대해 구미시 물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나,
- 신규 시설인 만큼 가급적 체육이외의 행사에 대한 임대는 자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